◎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248호**

2026년 전지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전지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등 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2026년 전지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30.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 전지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안)

1. **포상규모**: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등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2. **주최·주관**: 산업통상부·한국배터리산업협회

3. **포상 신청(추천)대상**: 전지 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 상세안내는 다음장의 '2026년 전지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요령' 참조

4. **신청기한**: **2026년 5월 15일(금)까지**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방법**: 우편(원본)제출 ***우편 발송 후 한글/워드 원본 파일도 메일 제출必***
 - (우 편)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37 8층,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메 일) 정책기획실 전두진 djjun@k-bia.or.kr

6. **문의처**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유공자 포상 담당자**
정책기획실 전두진 실장 (Email) djjun@k-bia.or.kr (Tel) 02-3461-9411

「2026년 전지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요령

목 차

Ⅰ. 포상 개요 ····· 1

Ⅱ. 포상 절차 및 심사 기준 ····· 7

Ⅲ. 신청방법 및 공적조서 기재요령 ····· 9

※ [별첨] 관련 서식

서식1)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서 ····· 13

서식2) 공적조서 ····· 14

서식3) 추천인 소속 현황 ····· 17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18

서식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19

서식6)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 ····· 20

Ⅰ 포상 개요

1. 목 적

○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을 기념하여, 배터리 산업의 성과와 위상을 기념하고 글로벌 선도국가·초격차 달성을 다짐하기 위해 배터리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함

2. 포상 훈격 및 규모

구 분		25년 포상 (참고)	수공기간
정부포상	산업훈장	1	· 훈장 : 15년 이상 · 포장 : 10년 이상 · 표창 : 5년 이상 · 장관표창 : 3년 이상
	산업포장	1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4	
산업통상부장관표창		13	
계		20	

※ 2026년도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3. 포상 신청 대상

○ 전지 관련 제조, 판매업계, 전지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전지 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가. 전지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에 공이 큰 자

1) 친환경, 고효율 등 신제품,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

2) 전지 시험, 표준화, 품질 향상, 국산화 등에 기여한 자

나. 전지산업 수출 확대에 공이 큰 자

1) 수출을 통한 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2) 신규 시장 개척 지원 등 수출 확대 지원에 기여한 자

다.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이 큰 자

1) 전지 산업 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한 자

2) 전지 기술 문화 확산 및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한 자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

라. 기타 전지 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공이 큰 자

【부문별 신청대상 및 훈격】

신청부문	훈 격	신청대상	비 고
전지 산업발전 유공자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기업체 대표 및 임원**	ㅇ **기업체 대표(임원)는** 전지업계에 종사하고 국내 전지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자로 다음 각 호에 공이 있는 자 - 기술개발, 품질향상, 수출증대, 수입 대체 노사화합 등에 공이 큰 자 - 종업원의 복지향상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	ㅇ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는 전지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신시장 개척,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노사협조에 공이 큰 자 ㅇ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는 전지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학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	ㅇ **학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는 전지산업 관련 기관, 학계/단체의 임직원으로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산업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시장개척, 생산성 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 ㅇ **학계 및 유관기관 연구개발 종사자**는 기본 자격은 상기와 동일하며 특히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포상 추천 제한 대상

가. 재(再)포상 금지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나. 포상 제한

1)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부 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포상기준 예외

1) 적용 대상

가)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2) 적용 절차

가) 추천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포상 협의 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 하여야 함

나) 추천기관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층 심사할 수 있도록 공적조서 등 심사 자료에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적조서 상단 및 포상후보자 명단의 비고 란에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이라고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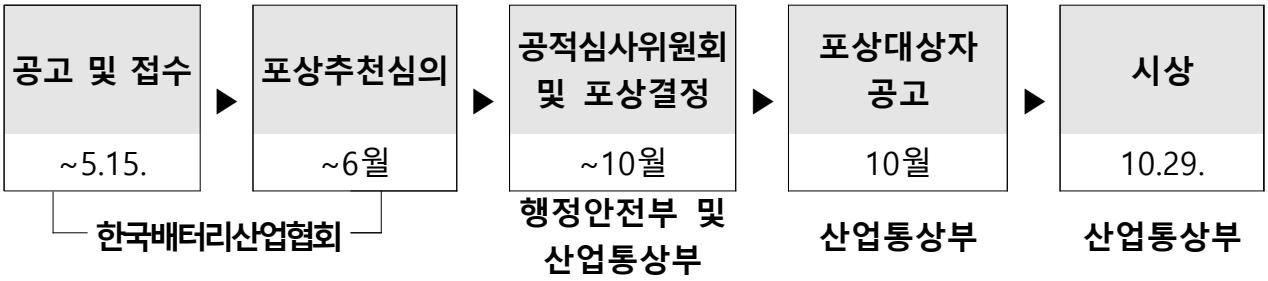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천기관에서 포상기준의 예외적용 대상자로 추천한 자에 대한 공적 내용 및 공적 정도 등을 검토하여 예외 적용 인정 여부를 결정함

Ⅱ 포상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1. 포상 절차

가. 심사 및 포상 일정

* 하기 일정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적 추천

○ 정부,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적에 대한 성과·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포상 후보 선정

- 포상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 내용 사실성 검토
- 평점표에 의하여 공적 내용을 개별 평가
- 포상 후보자의 훈격 및 추천 순위 결정

다. 공적심사

○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최종 추천

- 추천대상자의 신원조회,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사전확인
- 특히,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경우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공적을 충분히 확인 후 포상 여부 결정

2. 심사 기준 * 2026년 정부포상 업무 지침, 2026년 산업통상부 장관 포상 처리 지침에 의거

○ **수공기간**

- 심사대상자가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

○ **전지 산업 발전 기여도**

- 수출확대, 설비투자, 제품 국산화 등 산업 발전 기여도 평가

○ **개인 지표 평가**

- 수공기간, 평판도, 노사화합/인재양성, 리더십 등 개인 지표 평가

○ **제품 및 기술 개발**

- 개발 제품 및 기술의 수준, 독창성, 자립도, 시장성에 대한 평가
- 관련 특허 및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 실적이 우수한 경우 우대

○ **기타 전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항목**

- 전지 관련 무역통상 부문에 기여한 사항
- 전지 관련 신수요 창출에 기여한 사항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에 기여한 사항
- 지역사회 기여도, 환경친화사업,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기여한 사항

Ⅲ 신청안내 및 공적조서 기재요령

1. 신청안내

○ 신청마감 : ~ 2026. 5. 15.(금) * 마감 당일 18:00 도착분에 한 함

○ 신청방법 : ①**우편**(원본), ②**이메일**(파일) **2가지 제출**

- (우 편)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8층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메 일) 정책기획실 전두진 실장 djjun@k-bia.or.kr

○ 제출서류

① <서식 1>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서식 2> **공적조서 1부**(한글 또는 워드 파일 작성 송부)

③ <서식 3> **포상자 공적사항(채점용) 1부**

④ <서식 4> **추천인 소속(기업·단체) 현황**

⑤ <서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⑥ <서식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⑦ <서식 7> **추천제한여부확인서**

⑧ **공적증빙자료**(특허증, 수출실적 증명원 등)

⑨ **반명함판 사진**(JPG, PNG파일)

○ 문의처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두진 실장 djjun@k-bia.or.kr

○ 시상식 : **2026. 10. 29.(목) / 서울 지역(미정)**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 **일 시** : 2026. 10. 29.(목)
○ **장 소** : 서울 지역(미정)
○ **대 상** : 정부, 회원사 및 기업 대표, 유공자 포상자, 유관기관, 언론인 등 300여명
○ **내 용** :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식

※ 일시 및 장소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 인적 사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포상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유공자 포상식 종료 후 일괄 폐기합니다.

※ 신청 자격, 추천 제한 기준, 포상 훈격 결정 등 포상 업무지침은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처리지침을 따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적조서 기재요령

가. 유의사항

○ 공적조서의 **과거포상 실적을 반드시 기재**

- 수상연월일, 포상 훈격 및 부문을 정확히 기재

※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작성(중복수여·재포상 제한 등 확인용)

○ 정확한 내용기재(제출서류에 대한 허위 기재, 오기, 누락 등 유의)

나. 제출서류 세부 작성요령

○ **추천서**

- **담당자**는 포상 신청 관련 미비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해 대응 가능한 실무담당자 정보를 기재
- **추천자**는 소속 회사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한함

○ **공적조서** (한글 또는 워드파일로 작성)

- **공적요지**는 공적조서 내용을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요약 기재

※ 글자수 반드시 준수(글자수 계산기 기준 130byte ~ 150byte)

- **소속, 직위**는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에 표기되므로 약자가 아닌 공식명칭으로, 재직증명서 기준 정확하게 작성
- **주요 학력 및 경력**란은 '공적조서' 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월일로 연결되도록 작성(**최종 학력과 직전학력 2개 이상을 반드시 기재**)
- **과거포상기록**은 동일 공적으로 기 포상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니 구체적으로 기재(**장관 표창 이상의 경우**만 기재)

※ 추천 대상자 행안부 제출시 과거 포상기록 조회

- **공적내용**은 본인의 입장이 아닌 "조사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표, 그림 등은 공적조서에 삽입하지 말고 별도 기타 참고 자료로 작성

※ **공적에 대한 성과** 등은 가급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표현할 것
(예: ~대한 연구개발로 00억 수입대체 효과)

※ 정부 상훈 프로그램에 그림, 도표 입력 불가하여 필요시 서술식으로 표현

※ 공적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서술하지 말고 실적 위주로 정리

○ **포상 후보자 소속 기업·단체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법인가입번호는 추천 후보자 소속사업장 번호로 기재

○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모든 공적내용은 공적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적 증빙 자료가 없는 공적 내용은 불인정

○ **기 타**

- 경력(재직)증명서, 공적사항 등의 내용이 차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
- 작성된 자료는 원본을 마감일까지 접수하고, 한글 또는 워드 파일은 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서식 1>

「전지 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휴대전화		이메일	
	주요경력 (기간)	· · · 현		(~) (~) (~) (~)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서명		이메일	
	연락처	(유선전화/무선전화)		
공적내용	※ 휴먼명조 12point ※ 10줄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글자수 제한 X) ‣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 내용 요약은 1차 서류심사 및 수상 시 대외홍보용 자료로 활용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			

위 사람을 『2026년도 전지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직위: 성명: (직인)

* **추천자**는 소속 회사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한함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귀하

<서식 2>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국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상장기재용)	
직 위 (상장기재용)		등급(직급,계급)	
공적기간 (※일자까지 반드시 작성)	OO년 OO개월 OO일 (※ 추천일까지 계산하여 작성)		

공적요지

- 반드시 65자 이상 75자 이내(띄어쓰기 포함)
- 휴먼명조 12point
- 마지막은 '~ 기여함'으로 끝맺음 / '상기인은' 표현 사용금지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함

작성 예시
○○년 ○○월○○일부터 ○○년○○월○○일까지 ○○기업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여 ○○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억원)하고, 기간을 단축(○년○월)하여 기술 국산화에 기여함

조 사 자 <공란>

소 속	<공란>	직 위	<공란>
직 급	<공란>	성 명	<공란>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산업통상부) <공란> (인)

주요학력 및 경력(연월일까지 기재)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관련 경력사항 정확히 기재하고 경력이 없는 공백 기간은 공적기간에서 제외함
. . . ~ . .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력 빠짐없이 기재
. . .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띄어쓰기 포함), 표·그림·차트 사용불가]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객관적 사실(수치 위주)로 작성 필수

※ 휴먼명조 12p, 서술식(개조식×)으로 2,000자 이상(띄어쓰기 포함) 작성.

- 행안부의 상훈포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 입력 시 2,000자에 미달할 경우 시스템 입력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텍스트로만 2,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그림·차트 ×

※ 아래의 카테고리 형식 체계로 기재를 권장합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내용

* 참고사항

1. 산업발전 기여도

- 수출확대, 설비투자, 제품 국산화 기여도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항
- 신제품 개발 및 자체기술 개발, 기술도입, 산업융합 활동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한 사항

2. 상생협력/동반성장 기여도

- 전지산업 내 대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 기여한 사항

3. 제품/기술의 수익성 및 발전성 또는 파급효과

- 납품/판매 실적, 수출/수입대체효과/고용창출 등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공 적 내 용

4. 노사화합/인재양성, 윤리경영, 리더십 등 조직문화 개선 기여도

- 근무환경 개선 노력, 인적 자원 개발, 노사 상생활동, 교육 시스템 개선
- 비전과 가치,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성 등 리더십

5. 사회공헌 내용 및 기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전반적인 내용

- 정부 정책에 참여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
- 지역 사회 기여도, 환경친화사업,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서식 3>

추천인 소속(기업·단체) 현황

포상후보자			
성 명		직 위	

소속기업			
기업(단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종업원수	
업종		주 생산품	
사업장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설립연월일	
기업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타		
매출현황 (단위 : 억원)	2025년 총 매 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익 : 수 출 액 :		2024년 총 매 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익 : 수 출 액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 귀하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직 위(급)	
소속(주소)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직 위(급)	
소속(주소)			

위 본인은 전지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6>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

성 명		직 위(급)	
소속(주소)			

점검항목	해당여부	
	가	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미경과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후 5년 미경과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미경과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미경과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미경과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		
3. 「상훈법」제8조,「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대표자와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대표자와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법인의 고발,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 이력 1)고 발 : () 회 / * 연도 및 사유 기재 2)과 징 금 : () 회 / * 연도 및 사유, 금액 기재 3)시정명령 : () 회 / * 연도 및 사유 기재	-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9.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기타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10.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자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날인)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모든 공적내용은 공적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적 증빙자료가 없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반명함판 사진

□ 반명함판 사진파일(jpg, png) e-mail송부